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0월 23일, 김문수 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교육위원회(2025.11.26.) 상정, 검토보고, 제안설명,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제3차 법안심사소위(2025.1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1차 교육위원회(2025.1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문수 의원)

현행법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식생활습관 및 식생활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교육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

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관계법령상 유해물질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의 건강권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법률로 규정하여, 유해물질로 인하여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긍정적인 취지로 보임.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5조제2항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에 대해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폐기하거나 판매금지 등을 하도록 요청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해당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것을 1차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또한, 「학교급식법」 제10조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이나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해식품 등에 대한 판매 금지, 회수, 폐기 처분 등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입법실익이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임을 규정하는 것과, 식생활교육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의 기타 규정은 「학교급식법」이 식생활 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청소년의 식습관 악화와 영양 불균형, 비만 증가 등 건강

위험 요소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타당한 입법 조치인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정혜경 의원, 문정복 의원, 서지영 의원, 김태호 의원, 고민정 의원, 김문수 의원, 강경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